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의안번호	제	호
------	---	---

제출년월일 : 2007. 3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사유

-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발병율이 높아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병원위탁운영자(학교법인구미교육재단)로부터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부지 및 건립비(일부) 기부채납을 수용하여 병원을 신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【 사업개요 】

- 사 업 명 :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
- 사업위치 :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 외 6필지
- 사업규모 : 건립부지17,598m² 연건평 4,988m²
- 신축예산 : 6,577백만원(국비 2,336 도비 1,168 시비 2,073 운영자부담금1,000)

【 취득재산 : 신축 및 기부채납 】

□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

- 토 지 : 7필지 17,598m²
- 건 물 : 4,988m²(연면적)
- 취득가액 : 6,916,586천원

▶ 기부채납 : 사업부지 전부 및 사업비 일부 기부

- 토 지 : 7필지 17,598m²
- 기부채납 가액 : 1,339,586천원
 - 토 지 : 339,586(공시지가 기준)
 - 현 금 : 1,000,000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[illegible]

200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천 원, 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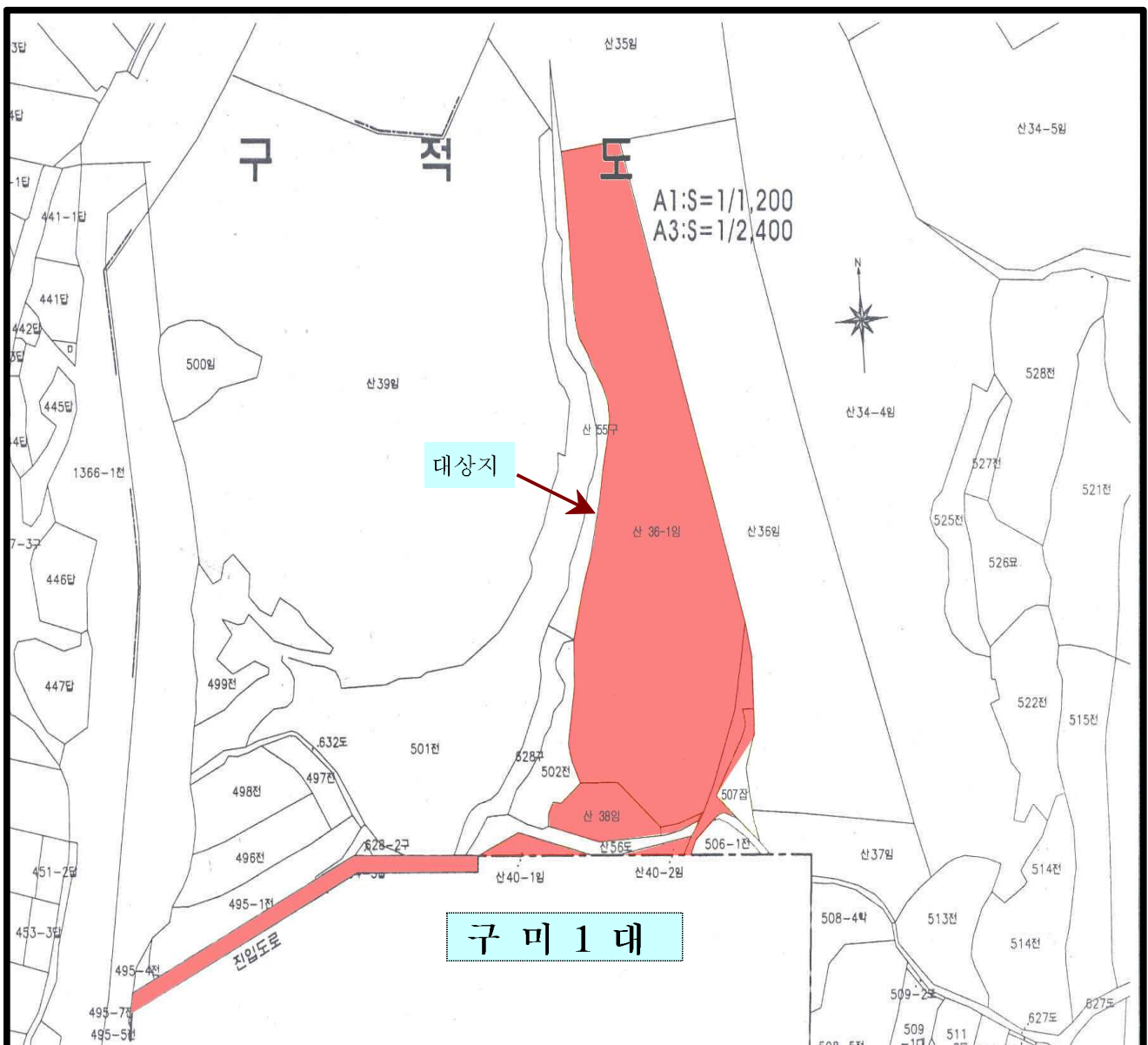
일련 번호	재산의 표시			추정가액	취득시기	취득사유	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,성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수량					
1	건물	구미시 부곡동 산36-1 일원	4,988	6,577,000	2007년말	구미시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	구미시 (기부채납 1,000,000 포함)	
2	토지	부곡동 산38	793	8,168	2007. 상반기	"	학교법인 구미교육재단	기부채납
3	"	부곡동 산36-1	14,876	148,760	"	"	"	"
4	"	부곡동 산40-1	188	1,918	"	"	"	"
5	"	부곡동 산40-2	88	898	"	"	"	"
6	"	부곡동 산57	446	4,460	"	"	"	"
7	"	부곡동 507	138	9,687	"	"	"	"
8	"	부곡동 407	1,069	165,695	"	"	"	"
			이	하	여	백		
	계			6,916,586				

취득대상 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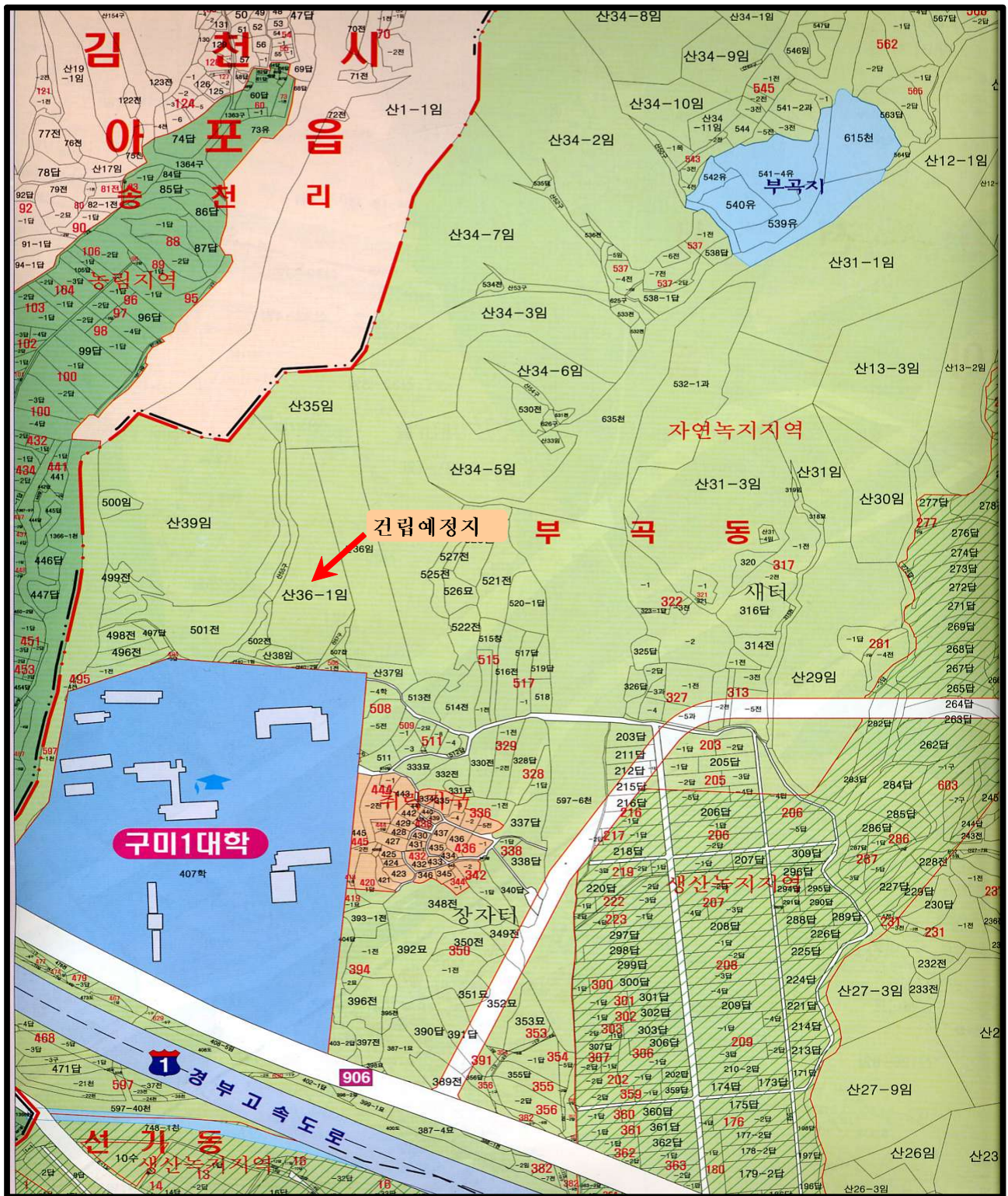
□ 재산의 표시 : 구미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부지

- ▶ 소재지 : 구미시 부곡동 산36-1번지 일원
- ▶ 지 목 : 임야, 구거, 잡종지, 학교용지
- ▶ 면 적 : 17,598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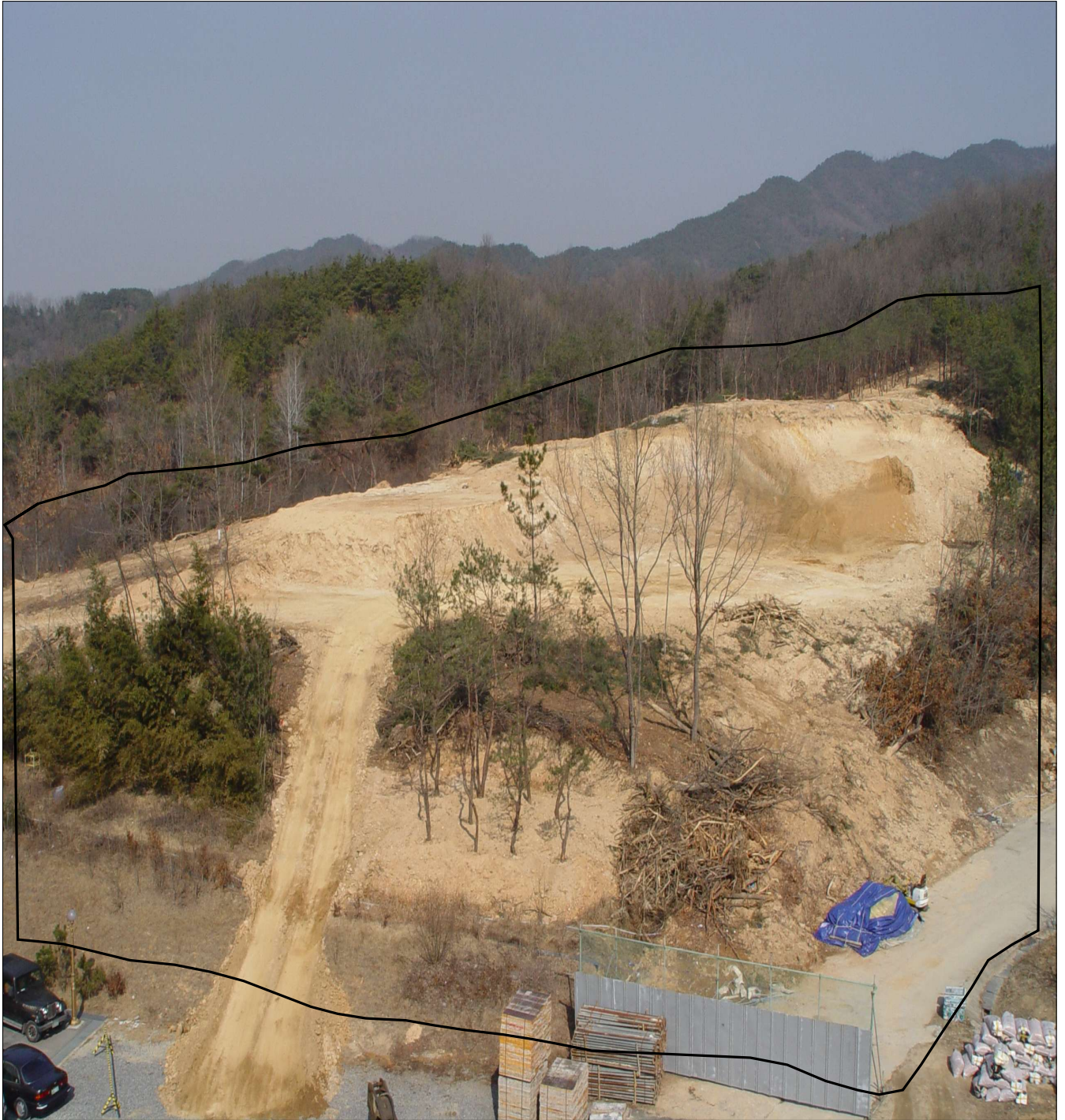
《구 적 도》



《구미시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위치도》



구미시 립노인전문요양병원
예정부지 현장 전경도
(구미시부곡동 산36-1번지 일원)



【 관 계 법 령 】

□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 사항)

-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~ 5. <생략>
 - 6.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(이하 "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

□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(매입, 기부채납, 무상양수, 환지, 무상귀속, 교환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및 처분(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한다.
 - 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)인 재산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

토지에 있어서는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(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. 이하 “개별공시지가”라 한다)로 하고,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「지방세법」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다만, 건물의 신·증축 및 공작물 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

2.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)인 재산

□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(공유재산관리계획)

-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 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.
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